

등록번호	공원녹지과-9834
등록일자	2016.5.18.
결재일자	2016.5.19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녹지팀장	공원녹지과장	도시관리국장	부구청장	구청장
박경진	代박경진	함석주	이진형	황치영	05/19 최창식
협 조					

가로수 민원 처리 지침 수립

서울의 중심
중구



도시관리국
공원녹지과

가로수 민원 처리 지침 수립

가로수 민원에 대한 일관성 있는 응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로수 민원처리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.

I 관련 근거

- 구청장 지시사항 제70호 381번 「가로수 민원처리지침 수립 및 시행」
 - 가로수 민원처리 지침을 수립하고 가로수 민원에 대해 일관성 있게 응대할 것.

II 민원처리지침

□ 가로수 이식

- 부득이한 경우 이식 허가(허가 신청자 이식 비용 부담하여 시행)
 -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경우(차량 진·출입로 개설 등)
 - 교통영향평가, 도로개설 등 도로 선형 변경으로 인한 경우
 - 횡단보도 신설로 인하여 간섭되는 경우
- 심의 후 이식 여부 결정
 -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숙박시설(호텔 등) 관광객 불편 초래 경우
(공항버스 등 관광객 승하차 불편, 은행 열매 악취 등)
 - 대형수목으로 보행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(보도 50%이상 점유 등)
 - 신축 건축물 현관 정면을 가로막는 경우 등

※ 심의위원 : 도시관리국장, 공원녹지과장, 외부전문가(공원녹지 MD)
[필요 시 이해당사자 배석]

□ 가로수 제거(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부과)

- 이식 대상 중 조경수로서의 가치가 없는 경우
 - 수형 불량 가로수
 - 가공선이 가로수 양측으로 지나가 이식 시 강전지가 불가피한 경우
 - 동공 등 부식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등
- 이식 대상 중 대경목으로 이식 후 활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 - 지하매설물(구조물) 등으로 정분으로 굴취가 불가능한 경우 등

□ 가로수 가지치기

- 간판 간섭
 - 수목 생장에 따라 지하고를 높이는 것을 원칙으로 수형 관리
 - 지하고를 높이지 못하는 경우 수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약전지를 원칙으로 시행하고, 가지치기로 인하여 수형이 불량해지는 경우 불가
- 도로표지판 간섭
 - 도로표지판 수평보 길이 연장 선협의
 - 수평보 연장 불가 시 수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약전지를 원칙으로 시행
 - 가지치기로 인하여 수형이 불량해지는 경우 이식

Ⅲ

보고자의견

- 가로수 관련 민원은 가로수 생육 및 수형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하여 명품거리로 조성 관리하고자 함.

붙임 : 관련사진 1부. 끝.